

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6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징수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·징수(분리고지 및 분리 납부 불가)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제명 및 해당조문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

3. 참고사항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”를 “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건강보험료”를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”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중 “보험료”를 “국민건강보험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구미시 저소득계층 <u>국민건강보험료</u> 지원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령·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<u>국민건강보험료</u>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소득계층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<u>보험료</u> 부과금액이 월10,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. 제3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보험공단”이라 한다) 구미시 지역 가입자이며 <u>보험료</u> 부과금액 기준 월 10,000원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2. 등록 장애인세대 3. 모·부자세대	구미시 저소득계층 <u>국민건강보험료</u>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하여 부과되는 <u>보험료</u>----- ----- 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u>국민건강보험료</u>----- ----- ----- 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• 법 제정에 따른 제명 변경 • 법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• 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